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중국 1 등주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 : 모투자신탁 법개정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 일부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. 08. 06

4. 대비표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 년 08 월 06 일 - 모투자신탁 법개정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 일부 정정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모집합투자기구 (2)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(생략)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모집합투자기구 (2)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(생략)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**종목집중위험**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마켓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주로 4 차 산업 관련 주식에 집중투자합니다.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위험이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<삭제>

	일반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잘 분산된 종목에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.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** (생략) **라. 운용자산규모** (생략)	**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** (업데이트) **라. 운용자산규모**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글로벌 4 차산업 1 등주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 : 모투자신탁 법개정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 일부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. 08. 06

4. 대비표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 년 08 월 06 일 - 모투자신탁 법개정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 일부 정정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모집합투자기구 (2)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(생략)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모집합투자기구 (2)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(생략)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**유동성 위험** (생략)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형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**유동성 위험** (생략, 현행과 동일)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
제 4 부	**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**	**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**

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(생략) **라. 운용자산규모** (생략)	(업데이트) **라. 운용자산규모**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중국 1 등주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2. 주요 변경내용: 자투자신탁 추가, 법개정사항 반영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8. 08. 06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추가>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하나 UBS 중국 1 등주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제 2 호 나. (생략) 법시행령제 79 조 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제 2 호 나. (생략, 현행과 동일) 법시행령제 79 조 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글로벌 4 차산업 1 등주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2. 주요 변경내용: 자투자신탁 추가, 법 개정사항 반영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8. 08. 06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추가>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하나 UBS 글로벌 4 차산업 1 등주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제 2 호 나. (생략) 법시행령제 79 조 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제 2 호 나. (생략, 현행과 동일) 법시행령제 79 조 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